

2017) 건축설비기사 과년도 2차 정오표[2017.2.20]

해당 페이지	정 오 표 (빨강색 글씨-수정된 부분)												
709 페이지 표	1.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조계산 대상 건축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. 층수</td> <td>2층 이상(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: 3층 이상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. 연면적</td> <td>500㎡ 이상인 건축물(창고, 축사,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. 높이</td> <td>13m 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. 처마높이</td> <td>9m 이상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. 경간</td> <td>10m 이상 *경간 :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(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함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구조계산 대상 건축물	1. 층수	2층 이상(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: 3층 이상)	2. 연면적	500㎡ 이상인 건축물(창고, 축사,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)	3. 높이	13m 이상	4. 처마높이	9m 이상	5. 경간	10m 이상 *경간 :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(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함)
	구 분	구조계산 대상 건축물											
	1. 층수	2층 이상(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: 3층 이상)											
	2. 연면적	500㎡ 이상인 건축물(창고, 축사,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)											
	3. 높이	13m 이상											
	4. 처마높이	9m 이상											
	5. 경간	10m 이상 *경간 :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(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함)											
	6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												
	7.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·기념관 등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,000㎡ 이상인 건축물												
8. 특수구조 건축물 중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과 특수한 설계·시공·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													

2017) 건축설비기사 과년도 1차 정오표[2017.2.2]

페이지	오	정	비 고
693 페이지	건축물의 용도분류	~~28. 장례사당 29.야영장시설	28개에서 29개로 개정(29. 추가)
699 페이지	[표]속 내용 -고층건축물(삭제)	- 6층이상 건축물 - 높이 22m 이상 건축물	☞ 하단참조
703 페이지	[표]속...지방건축위원회	④ 비관건축 안의 건축에 관한 사항	④ 내용삭제
707 페이지	1)용도변경 시설군의 분류	☞ 하단참조	법 개정(대상 추가)
724 페이지	1)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제한	㉠~~~~, 산후조리원	㉠항에 추가내용

\* 위의 내용 이외에 의문점이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 [www.inup.co.kr](http://www.inup.co.kr) 건축기사4주완성 동영상강좌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**하단참조 내용**

\* 건축법규 개정, 신설사항에 유의하여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!!

☞ 699p (삭제 후 수정)

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- 6층 이상 건축물 - 높이 22m 이상 건축물 - 상업지역(근린상업지역 제외) 안의 건축물 중 2000㎡ 이상 다중이용업·공장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	증설·해체하거나 벽면적 30㎡ 이상 수선, 변경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☞ 707p [표]속 → 추가

㉠ 교육 및 복지시설군	• 의료시설 • 수련시설	• 교육연구시설 • 야영장시설	• 노유자시설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